

##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

「은행법」 제58조제1항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5조제9항 및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5일  
금융위원회

- 아 래 -

### 가. 신청현황

신청자	신청일자	신청취지 및 내용
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	2017.8.31.	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

### 나.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

위 '가. 신청현황'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'17.9.25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자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
은행과 송현지 사무관(02-2100-2954, sobrious@korea.kr)

2017. 9. 5.

금 용 위 원 회